

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	11-44
----------	-------

발의년월일 : 2011. 06. 20.

발 의 자 : 장영숙 위원 조남진 위원
강성국 위원 김수진 위원
김순금 위원 서종수 위원
윤동현 위원 이필레 위원
한일용 위원

1. 제안이유

「국가보훈기본법」 등 국가보훈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지원대상을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로 함. (안 제3조)
- 나. 구청장은 희생·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공훈선양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함. (안 제5조)
- 다. 보훈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. (안 제6조)
- 라. 다른 법령, 조례 등에 의하여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지원을 금지함. (안 제8조)

3. 제정근거

「국가보훈기본법」(법률 제9395호, 2009. 5. 1 시행) 제5조

4. 조 례 안 : 따로붙임

5. 예산조치 : 필 요

6. 기타사항

가. 입법예고 : 해당없음

나. 관계법령 : 따로붙임

다. 예산조치 관련 지방자치단체장 의견 : 따로붙임

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국가보훈기본법」 등 국가보훈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"희생·공헌자"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 관계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 - 가.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
 - 나.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
 - 다.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
 - 라.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
2. "국가보훈대상자"라 함은 희생·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 관계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.
3. "국가보훈 관계법령"이라 함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.
4. "보훈단체"라 함은 국가보훈 관계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.

제3조(지원대상)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마포구(이하 "구")

라 한다)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(이하 “단체”라 한다)로 한다.

제4조(책무) ① 구는 희생·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,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구민은 희생·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,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구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.

제5조(공훈선양사업)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희생·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훈선양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

1. 국경일·기념일 등 각종 행사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
2. 각종 행사에 국가보훈대상자의 초청과 의전상의 예우 실시
3.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문화 행사의 실시
4. 보훈관련 기념일·명절 등에 국가보훈대상자 위안행사 및 위로·격려
5. “호국·보훈의 달”에 지역 출신 희생·공헌자의 공훈 선양 및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
6. 구민에 대한 나라사랑 정신 함양 교육

제6조(예산지원)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예산을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.

1. 국가보훈대상자의 권익신장과 보훈회관 등 시설의 운영
2. 국가를 위한 희생·공헌자 추모 또는 기념사업

3. 호국·보훈정신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
4. 독립운동 발상지 및 전적지 순례사업
5. 그 밖에 구청장이 단체의 육성·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7조(지원신청 및 보고) ① 제6조에 따라 예산지원을 받고자 하는 단체의 장은 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, 예산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예산지원을 받은 단체의 장은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조금 관리 조례」 및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예산 집행결과를 정산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8조(중복지원 금지)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 및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.

제9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 계 법 령

국가보훈기본법

[시행 2009. 5. 1] [법률 제9395호, 2009. 1.30, 일부개정]

- 제5조 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·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,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.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-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·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-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.

"더불어 잘 사는 복지 마포"



마포구



수신자 마포구의회의장

(경유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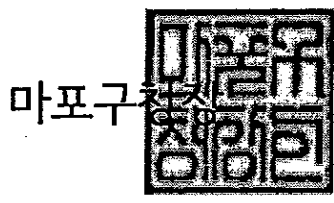
제목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에 대한
검토의견 회시

1. 마포구의회-2567(2011.6.15.)호와 관련입니다.

2. "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 제정과 관련 의견조회"와 관련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
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에 대한 검토의견을 붙임과 같이 회시합니다.

붙임 : 1. 의원발의 조례안 검토의견서 1부

2.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(의원발의) 1부. 끝.



복지기획팀장	안종진	복지행정과장	곽영순	주민생활국장	정상택	부구청장	06/20 김영효
--------	-----	--------	-----	--------	-----	------	--------------

협조자	법무팀장	김영미	예산팀장	이문화	대외협력노무팀장	조충연
-----	------	-----	------	-----	----------	-----

시행 복지행정과-17735 (2011.06.20.) 접수 마포구의회-2626 (2011.06.21.)

우 121-711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(성산동370번지) /www.mapo.go.kr

전화 (02)3153-8808 /전송 (02)3153-8849 / donq4r@mapo.go.kr / 공개



<사는 구는 달라도 번호는 하나! 120>
<앞으로는 집에서 「민원24」로 처리하세요!>



의원발의 조례안 검토의견서

조례안 제명	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에 대한 검토의견
발의 의원	장영숙 의원 외 8인
소관부서	복지행정과
상임위원회명 및 상정예정일	복지도시위원회
사전보고 단계	
주요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국가유공자 및 단체 지원 목적에 관한 사항 ○ 국가유공자 및 단체 지원에 대한 구청장 책무에 대한 사항 ○ 보훈단체 지원 등에 관한 사항 ○ 희생·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 공훈선양 사업에 관한 사항
검토의견	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해 조례 제정에 동의함
현재 예산지원현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시비로 참전명예수당 등 지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회원 1인당 월 3만원 - 보훈의 달 위로금 3만원 ~ 10만원 지원 ○ 구 예산으로 사업비 일부 지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2011년 마포구보훈회관 건립 입주(운영비 1,320만원) - 국가유공자 위문금 지원(4,720만원) - 독립유공자 위문금 지원(700만원) - 전적지순례비 지원(1,670만원) - 체련대회비 지원(1,070만원)